

『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11월 1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2월 5일

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유 영 명

나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·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.

다. 주요내용

- 10개통·리 증설에 따른 통리장 정수 개정
 - 통·리장 10명 증원 : 610개 통리장(통장 439, 리장 171)
→ 620개 통리장(통장 448, 리장 172)
 - 산동면 1명, 선주원남동 2명, 인동동 7명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성 애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라 통리의 수가 일부 조정되어 통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610명에서 산동면 1명, 선주원남동 2명, 인동동 7명 등 총 10명이 증가된 620명으로 조정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에 맞게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